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852

발의연월일: 2021. 12. 10.

발 의 자:서삼석・오영환・김철민

이개호 · 주철현 · 윤재갑

양기대 · 김승원 · 송재호

박 정・윤준병・장경태

서동용 · 신영대 · 소병철

김승남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하 "초과생산량"이라 함)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한 경우 또는 그 외의 요인으로 수확기 등의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등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미곡의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음.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쌀 예상생산량(약 383만 톤)이 전년 대비 9.1% 증가하고, 쌀 추정수요량(약 360만 톤)을 약 6.5%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곡 가격의 급격한 하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제적인 시장격리 즉, 미곡 초과생산량 매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5년간 쌀 식량자급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01%였던 쌀 자급률이 2020년 92.8%로 감소하였고 2021년 9월말 기준 국산 쌀 재고(15만 톤)는 2017년의 9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미곡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종전의 미곡의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여 초과생산량에 해당하는 물량을 매입하게 함으로써 식량자급 최후의 보루인 미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법률 제 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이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해당 연도에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하 "초과생산량"이라 한다)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미곡을 매입할 때 연속된 공급 과잉으로 민간 재고가 누적되는 등쌀값 안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과생산량 이상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
- 1.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 2. 제1호 외의 요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는 시기의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안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① ~ 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물량은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수있다.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 량(이하 "초과생산량"이라 한 다)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미곡을 매입할 때 연속된 공급 과잉으로 민간 재고가 누적되 는 등 쌀값 안정을 위하여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과생 산량 이상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

1.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 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 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 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

	<u>상되는 경우</u>
	2. 제1호 외의 요인으로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기
	의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u>5% 이상 하락한 경우</u>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